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95
----------	-------

발의연월일 : 2026. 8. 7.

발 의 자 : 정동만 · 서명옥 · 박성민
강명구 · 김선교 · 김은혜
윤영석 · 서천호 · 정성국
이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의 본투표 이외에 원활한 참정권 행사와 투표 편의를 위하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간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꾸준히 사전투표 관리부실과 신뢰성 훼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 관리부실과 투표함 관리 공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크게 나타났음. 또한, 본 투표일과 사전투표일 간의 간극으로 인하여 법률상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을 후보자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됨.

이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여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되,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

항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을 “선거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을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를 “투표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4호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를 각각 “투표소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을 “투표소를”로 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제58조의2제2호 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를 “투표소”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을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제62조제2항제1호 중 “제1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읍·면·동이 설치·폐지·분할·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로 한다.

제6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22조의2제3항제6호 중 “投票參觀人 및 제162조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을 “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을 각각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제146조의2의 제목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투표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를 “1명을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각각 “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48조를 삭제한다.

제151조제3항 중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이하 “사전투표함”이라 한다)과 郵便으로 접수한 投票를 보관하는 投票函(이하 “郵便投票函”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數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선상투표신고인수”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이하 “우편투표함”이라 한다)의 수는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선상투표신고인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또는 제6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5조제1항 본문 중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를 “오후 9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

은 조 제5항 중 “사전투표·거소투표”를 “거소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닫으며, 사전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를 “닫는다”로 한다.

제158조 및 제162조를 삭제한다.

제16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66조의2제2항 중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을 “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76조의 제목 중 “사전투표·거소투표”를 “거소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투표·거소투표”를 “거소투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각각 “우편투표함”으로 한다.

제1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를 “거소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212조의 제목 중 “거소투표·사전투표”를 “거소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2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15조제1항 단서 중 “·선상투표 및 사전투표”를 “ 및 선상투표”로 한다.

제218조의18제1항 후단 중 “일련번호에 관하여는 제151조제6항 후단을 준용한다”를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18조의25제1항 후단 중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를 “거소투표”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호 중 “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을 “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242조제1항제1호 중 “·사전투표소 및”을 “ 및”으로 한다.

제244조제1항 중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을 “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48조제2항 중 “投票事務員·사전투표사무원”을 “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49조제2항 중 “投票事務員·사전투표사무원”을 “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56조제3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16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을 “또는”으로 한다.

제261조제4항 중 “제148조제4항 및 제173조제3항”을 “제17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사목 중 “제147조제10항(제14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47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제162조제4항, 제181조제3항”을 “제18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바목 중 “제147조제9항, 제148조제3항”을 “제147조제9항”으로,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을 “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77조의2제1항 중 “, 사전투표관리관”을 “, ”으로 한다.

제278조제4항 단서 중 “제158조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을 “제218조의19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제12조(선거관리) ①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舉事務를 統轄・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218조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제218조의2에 따른 재외투표관리관의 違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取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①
(생략)

②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

제12조(선거관리) ①

투표관리관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투표소에서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1. -----

----- 투표소에 -----

2. · 3. (현행과 같음)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
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
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거
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5의2. ~ 6. (생략)

⑤ ~ ⑧ (생략)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
여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
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하나
의 선거인명부(이하 “통합선거
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③ 통합선거인명부는 전산조직
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④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4. 투표소에-----

5. 투표소를-----

5의2. ~ 6.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
하기 위하여 제148조제1항에
따른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한 선거인
명부를 출력한 다음 해당 읍·
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봉합·봉인하여 보관하여
야 하며, 그 보관과정에 정당추
천위원이 참여하여 지켜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
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누구든지 제4항에 따라 출
력한 선거인명부를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열람
·사용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⑥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선
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
하여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보
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

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4. (생략)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생략)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 · 리 · 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 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2. 투표소

3. · 4. (현행과 같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투표참관인-----

투표참관인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第62條(選舉事務關係者の 選任)

① (생략)

② 選舉事務長 또는 選舉連絡所長은 選舉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舉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舉事務員(제1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1. 大統領選舉

選舉事務所に 市・道數의 6 倍數 이내와 市・道選舉連絡所에 당해 市・道안의 區・市・郡(하나의 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數(그 區・市・郡數가 10 미만인 때에는 10人)이내 및 區・市・郡選舉連絡所에 당해 區・市・郡

-----.

-----.

第62條(選舉事務關係者の 選任)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안의 읍·면·동(제148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폐지·분할·합병 직전의 읍·면·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7조제1항, 제118조제5호 및 제121조제1항에서 같다)수 이내

2. ~ 8. (생략)

③ ~ ⑧ (생략)

제65조(선거공보) ① ~ ④ (생략)

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합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장·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읍·면·동
이 설치·폐지·분할·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

2. ~ 8.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65조(선거공보)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 ⑭ (생략)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 5. (생략)

6. 第161條(投票參觀)의 規定에 의한 投票參觀人 및 제162조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手當과 식비

7. (생략)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개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

⑥ ~ ⑭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5. (현행과 같음)

6. -----
---투표참관인-----
-

7. (현행과 같음)

④ -----투표참관인-----

-----.
-----투표참관인-----

-----.

에게만 지급한다.

⑤ (생 략)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
투표관리관) ① 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
관 1명을 각각 둔다.

②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
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
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
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
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및 사
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협조요구
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
에 따라야 한다.

④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
리관의 위촉 및 해촉,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⑤ (현행과 같음)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① ----

-----1명을
둔다.

② 투표관리관-----

-----위촉한다.

③ -----

-----투표관리관-----

-.

④ 투표관리관-----

-----.

<삭 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2. 읍·면·동이 설치·폐지·분할·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
3. 읍·면·동 관할구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한·사용협조, 설비,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

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
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
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
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
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전투표소의 설치·공고·
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
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한다.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
성) ① · ② (생략)
③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이하
“사전투표함”이라 한다)과 郵便
으로 접수한 投票를 보관하는
投票函(이하 “郵便投票函”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數
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
투표신고인수·선상투표신고인
수를 감안하여 당해 區·市·
郡選舉管理委員會가 정한다.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
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
관하는 투표함(이하 “우편투표
함”이라 한다)의 수는 거소투
표신고인수 및 선상투표신고인
수-----

-.

④ · ⑤ (생략)

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
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
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
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
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
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
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
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
아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
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
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⑧ · ⑨ (생략)

第155條(投票時間) ① 投票所는
選舉日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

④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⑦ 제1항-----

-----.

⑧ · ⑨ (현행과 같음)

第155條(投票時間) ① -----

오후 9시에-----.

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投票所에서 投票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選舉人에게는 番號票를 부여하여 投票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②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되, 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項 但書의 規定은 사전투표소에 이를 準用한다.

③ (생략)

④ 사전투표소에서 投票를 開始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記票所内外의 異狀有無에 관하여 檢査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參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投票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參觀하게 하

-----.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있다.

⑦ · ⑧ (생략)

제158조(사전투표) ① 선거인(거

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
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
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
표할 수 있다.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
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
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
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
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
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
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
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
다.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
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합

⑦ ·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2.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⑦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투표소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157조제3항 및 제5

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⑧ 전기통신 장애 등이 발생하
는 경우 사전투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사전투

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
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
관하게 하고, 제158조제6항제1
호에 따라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
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시·군선거관
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사전투표
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
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2항에
따라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

<삭 제>

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을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천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사람을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천에 의하여 지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候補者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選舉權者중에서 本人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者를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⑤ 사전투표참관에 관하여는 제161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는 “不在者投票所를 設置·운영하는

選舉管理委員會”로 본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본다.

⑥ 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63條(投票所 등의 出入制限)

① ~ ③ (생략)

④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의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64條(投票所 등의 秩序維持)

① ~ ③ (생략)

④ 사전투표소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본다.

第163條(投票所 등의 出入制限)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第164條(投票所 등의 秩序維持)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第165條(武器나 凶器 등의 携帶 禁止) ① (생 략)

②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 한다)에서의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第166條(投票所内外에서의 騷亂 言動禁止 등) ① ~ ④ (생 략)

⑤ 사전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일에”는 “사전투표소 안에서”로 본다.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생 략)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第165條(武器나 凶器 등의 携帶 禁止)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第166條(投票所内外에서의 騷亂 言動禁止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투표관리관-----

--.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區
·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郵
便으로 송부된 사전투표·거소
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
에는 당해 區·市·郡選舉管理
委員會의 政黨推薦委員의 참여
하에 이를 즉시 郵便投票函에
投入·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
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
에 투표함의 봉합·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
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
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
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176조(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

----거소투표-----

-----.

<삭 제>

③ -----
-----우편투표함-----

-----.

④ -----우편투표함-----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開票參觀人의 參觀하에 選舉日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開票所로 옮겨서 一般投票函의 投票紙와 별도로 먼저 開票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79조(무효투표) ① (생략)

②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도 이를 無效로 한다.

1. 2. (생략)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는 無效로 하지 아니한다.

1. ~ 9. (생략)

10.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제212조(거소투표·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

-----.

⑤ (현행과 같음)

제179조(무효투표)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소투표-----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9. (현행과 같음)

<삭제>

제212조(거소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

한 특례) 동시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인마다 하나의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1. (생략)

2.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투표지 회송

第213條(投票參觀人選定 및 지정 등에 관한 特例) ① · ② (생략)

③ 동시선거에서 사전투표참관인은 제162조제2항에 따른 선정·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당해 選舉에 참여한 政黨마다 2人을, 무소속후보자는 1人을 선정·申告하여야 한다.

④ 同時選舉에 있어서 사전투표참관인은 8명 이내로 하되,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8명을 넘는 때에는 管轄選舉管理委員會는 政黨이 선정·申告한 者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人員은 무소속후보자가 선정·申告한 者

-----.

1. (현행과 같음)

<삭제>

第213條(投票參觀人選定 및 지정 등에 관한 特例)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중에서 8명에 달할 때까지 抽籤에 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政黨이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제1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政黨順位의 앞順位의 政黨이 선정·申告한 者부터 8명에 달할 때까지 지정한다.

第215條(開票參觀人 등에 관한 特例) ① 同時選舉에 있어서 開票參觀人은 第181條(開票參觀)第2項의 規定에 의한 선정·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마다 8人을, 무소속후보자는 2人을 선정·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거소투표·선상투표 및 사전투표의 開票를 하는 때에는 政黨 또는 候補者가 선정·申告한 者중에서 政黨은 4人씩을, 무소속후보자는 1人씩을 參觀하게 한다.

② (생략)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또는 재외

第215條(開票參觀人 등에 관한 特例) ① -----

-----.

-- 및 선상투표-----

-----.

②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① -----

투표소관리자(이하 “책임위원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재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게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에 관하여는 제151조제6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 ~ ⑤ (생략)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①
(생략)

② 재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선거일 오후 6시(대
통령의 결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에 개
표소로 옮겨서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

[illegible]

-----일련번호는 바코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
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
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
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
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오후 9시 -----

③ _____

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다.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개표하는 때에는 선거일 오후 6시 이후에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공관에서 개표하고,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⑤ · ⑥ (생략)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①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79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제7호·제10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는 “재외투표”

-----오후

후 9시-----

·.

④ -----

-----오후 9시-----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① -----

-----거소투표-----
표-----

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는 “재외선거인등이”로,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는 “재외투표”로 본다.

② · ③ (생략)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投票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지 않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ten horizontal dashed lines, typical of primary-ruled notebook paper.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

[illegible]

투표

참관인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투표관리관

第2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⑥ ~ ⑧ (생 략)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u>사전투표소</u> 및 <u>선상투표소</u>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생 략) ② · ③ (생 략) 第244條(選舉事務管理關係者나	----- -----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 ----- ----- -. 1. ----- ----- ----- ----- <u>및</u> ----- ----- ----- ----- ----- ----- -----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244條(選舉事務管理關係者나
--	--

施設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①

투표사무원

② (현행과 같음)

第248條(詐僞投票罪) ① (생 략)

②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舉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投票事務員・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 行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第249條(投票僞造 또는 增減罪)

① (생 략)

②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舉事務에 關係있는 公務員(投票事務員・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나 從事員이 第1項에 規定된 行위를 한 때에는 3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생 략)

第248條(詐僞投票罪) ① (현행과 같음)

② -----

-----투표사무원-----

-----.

第249條(投票僞造 또는 增減罪)

① (현행과 같음)

② -----

-----투표사무원-----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選舉秩序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생략) 나. 제4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사용 또는 유출한 자 다. (생략) 라. 제161조제7항(제16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 마. ~ 아. (생략) 3.·4. (생략) ④ · ⑤ (생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③ (생략) ④ 제147조제3항(제148조제4항 및 제1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 ----- -----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다. (현행과 같음) 라. -----또는----- ----- ----- ----- 마. ~ 아.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73조제3항----- ----- ----- ----- ----- ----- -----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萬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者

가. ~ 바. (생략)

사. 제146조의2제3항이나 제1
47조제10항(제148조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또는 제174조제3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
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
지 아니한 자

아. (생략)

3. ~ 6. (생략)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00
萬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제161조제3항 단서, 제162조
제4항, 제181조제3항 또는 제
218조의2제4항에 따라 선거
관리위원회·재외선거관리위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제
147조제10항-----

아.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⑧ -----

-----.

1. -----제181조
제3항-----

2.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제147조제9항

투표사무원

2의2. ~ 6. (현행과 같음)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

